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3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3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2년 8월 9일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(의안번호 53)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2022년 8월 12일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(의안번호 59)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2022년 8월 29일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(의안번호 93)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각각 2022년 8월 12일과 2022년 9월 2일 및 2022년 9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상기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, 이들 3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의안번호 53번과 의안번호 59번은 모두 임신부교통비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개선을 위해 발의되었으며, 의안번호 93번은 자녀양육가정의 양육부담 해소 및 일·생활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를 조정하여 하나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시장이 국적·인종·종교·나이·신체조건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- 제4조의3 이하의 임신부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4조의3).
-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신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계속 거주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의4제1항제1호).
-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. (안 제5조제1항)
- 자녀 양육부담 경감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, 자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일·생활 균형 지원으로 바꾸고,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)
- 일·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, 자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·인종·종교·나이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의3 중 “임산부”를 “임산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“임산부”를 “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양육 부담”을 “양육부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 및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

6.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

7.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일·가정 양립 지원)”을 “(일·생활 균형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”을 “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가족친화”를 “일·생활 균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일·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

4.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

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,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 개정규정의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1일 현재 임신 중이었거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소급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시장은 <u>임산부</u>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임산부</u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·인종·종교·나이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---- <u>임산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-----.</p> <p>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제5조(자녀 양육부담 경감)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.</p> <p>1. 자녀 <u>양육 부담</u>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</u> 등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<u>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자녀 양육부담 경감) ① -- ----- ----- --.</p> <p>1. --- <u>양육부담</u>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</u></p> <p>6. <u>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</u></p> <p>7. <u>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② <u>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일·가정 양립 지원) 시장은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려는 <u>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</u>을 위한 지원 2. <u>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</u> 및 <u>확산을 위한 지원</u> 3. (생략)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① -- ----- ---- <u>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일·생활 균형</u> ----- ----- 2. <u>일·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</u>을 위한 지원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</u> <p>② <u>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</p>